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6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28.

발의자 : 김현아 · 주호영 · 문진국

김무성 · 유승민 · 이원욱

김관영 · 김영우 · 하태경

이태규 · 김수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,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

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, 제49조의7제1항제4호 신설, 제57조의3 신설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세대원”을 “세대원(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”를 “입주자와 그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
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거주 여부
6. 그 밖에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57조의3 및 제57조의4를 각각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로 하고,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57조의5(종전의 제57조의4)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7조의3(벌칙)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(생 약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 약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57조의3(별 칙) (생 약)</u></p> <p><u>제57조의4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1. (생 약)</p> <p>2. <u>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</u></p>	<p><u>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거주 여부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7조의3(별 칙)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<u>제57조의4(별 칙) (현행 제57조의3과 같음)</u></p> <p><u>제57조의5(별 칙) 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---	--